
수급자의 자기선택권 존중을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안내자료



도란도란 요양원
Dorandoran Nursing Home

1)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목적

- (1)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을 존중함**으로써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
- ①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 : 본인의 병 상태 및 예후,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해 알고 스스로 결정할 권리로 가능한 미리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문화 조성 및 유도.
 - ②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 의학적으로 무의미하고, 원치 않을 때는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하는 것을 보장.
- (2) 연명의료결정제도 내용 :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임종과정이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의 뜻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결정 및 이행을 법적으로 보호**.
- (3) 기본원칙 :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선언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음.
- ①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불가침
 - ② 환자의 최선의 치료를 받을 권리와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
 - ③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며, 그에 따른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할 의료인의 의무

(4)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용어

- ① 임종과정 :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 ②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
- ③ 말기환자 :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④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및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함
- 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함
- ⑥ 연명의료계획서 : 말기환자등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
- ⑦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함

2)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순서

(1) 연명의료에 관한 사전 결정

- 「연명의료결정법」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 남겨놓을 수 있음.
- 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부터 작성 가능.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함.
- ②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본인이 직접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 의무	상담사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2) 연명의료의 유보 및 중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적절한 절차에 따라야 함.
- ①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판단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에 의해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라는 판단을 받아야 함.
- ※ 단, 말기환자가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임종과정에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담당의사 1인의 판단으로 같음 할 수 있습니다.
- ②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의 결정 확인
 -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경우 :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를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담당의사가 사전 작성된 문서를 확인.
 - 환자가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 :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이 문서가 적법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
- ③ 연명의료의 유보 또는 중단 : 해당 환자에 대한 시술이 더 이상 치료효과가 없다는 의학적 판단(STEP 1)과 환자도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는다(STEP 2)는 요건이 동시 충족하면 이행 가능.
- 이행 이후에도 담당의사는 이행에 따른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환자에게 편안한 임종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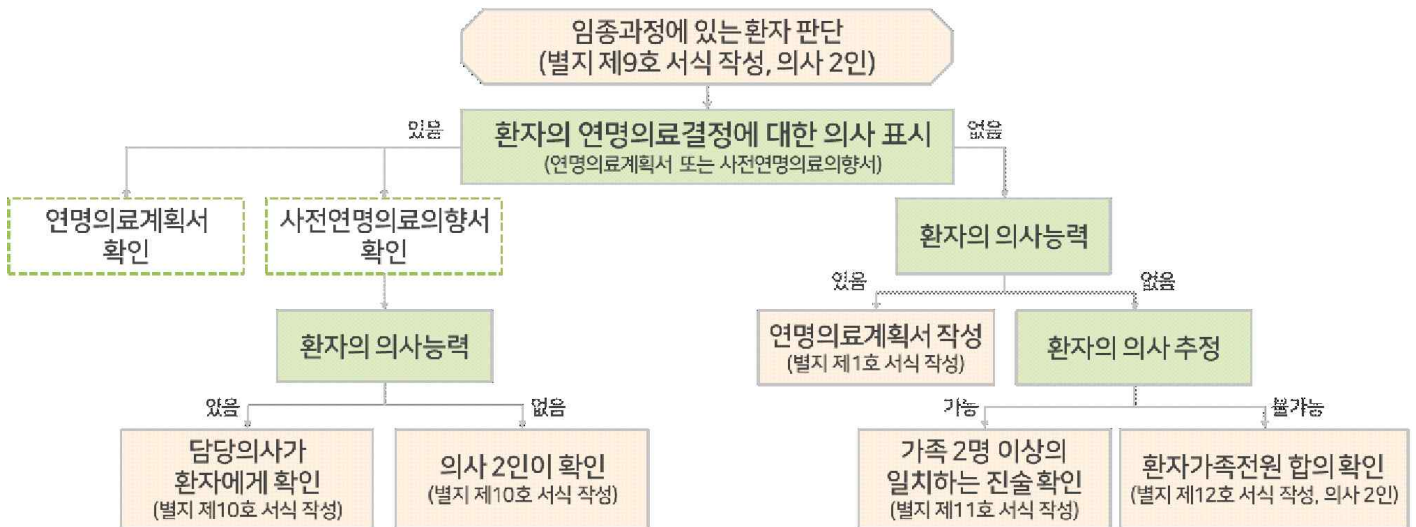


그림 3 연명의료중단결정의 절차 순서도

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상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및 등록 등을 실시하는 기관.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 노인복지관 등이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 실시.
- 인천서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26.4km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100번길 25	032-290-3972
검단탑병원	27.6km 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9번길 5	032-590-0317
의료법인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28.0km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 23 의료법인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032-580-9774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작성가능기관검색 (<https://www.lst.go.kr/addt/composableorgan.do>)

-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야 비로소 법적 효력을 인정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한 결정은 현재 구체적인 상병에 관한 의사는 아니므로 추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판단되었을 때 담당의사가 작성자 본인에게 다시 확인하여야 이행될 수 있음
- 만일 환자가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의학적 상태이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함께 확인해야 함

2025년 연명의료 결정제도 안내 및 동의서

도란도란요양원은 노인요양시설로서, 수급자의 개인적인 의사를 존중하며, 모든 수급자의 존엄성과 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분들이 생애 말기에서 자기 선택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안내를 받았으며, 연명치료에 동의/비동의 합니다.

제공일자 : 202 년 월 일

제공(안내)방법 : ☐ 방문 ☐ 우편 ☐ 모사전송

제 공 자 : (인)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련하여 도란도란요양원으로부터 안내를 받았고 이에 관한 자료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수급자명 : (인)

생년월일 :

보호자명 : (인) 관계 ()

도란도란요양원

